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23차 정기
일시	18. 07. 23 14 : 00
장소	총학생회실

참석확인 (8/13)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부총	총
○	X	X	○	○	X	○	X	X	○	○	○	○

□ 논의 안건

1. 반성폭력 회칙 개정 초안

—자연과학대학

- 5조 해설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부분,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에 대한 오독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
- 6조 3항 '사적 폭력'의 의미 전달이 불분명하며 이는 오독의 여지가 있음. 절차 밖에서 폭력을 휘두른다는 문장 역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예를 들어 피해당사자 혹은 가해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하는 것인지, 사건 해결을 도맡은 기구에 대한 폭력인지, 사건 해결 기구가 사건 당사자에게 가하는 폭력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해설로 예시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
- 8조 1항의 1(보편적 권리) 부분을 삭제하되, 이를 8조 1항의 내용에 포함해야 할 것.
- 8조 1항의 4 '도움을 구할 권리'의 세부화에 대하여 굳이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음. 총학생회칙에 학생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보다 넓게 삽입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 8조 2항, 8조 3항의 가해당사자와 피해당사자의 권리차이에 대해 일부 조정할 필요 있음. 확정된 가해자가 아닌 당사자의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해당인의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함. 가해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서술이 부실하므로 그를 역이용하는 문제 발생 가능. 존중받을 권리 등에 대한 서술 필요.
- 회칙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부분의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사회과학대학

- 10조 3항 4 세부적인 서술 필요
- 공론장 상정,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지 추가 서술 필요
- 5조 해설,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보호되지 않는다.'문장, 비하 앞에 '성적으로'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함.('비하'의 사전적 의미 범위가 넓으므로 한정 필요)
- 8조 2항 1 치유와 회복의 권리, 공간 분리와 휴지기의 기간에 대한 명시와 공동체의 배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 있었으면 함. 또한 공동체가 피해자에게 어떤 것을 보상,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시가 있기를 바람.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칙의 경우 '학생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1차 수사기관의 결론을 따를 수 있다'는 해설 존재. 모든 사건에 대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대책위에 있기는 어려울 것. 대책위의 판단이 1차 수사 결과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함. (자연과학대학: 사회 상규에 따른 법적 판단과 공동체의 판단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님. 법리적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 부정적./사회과학대학: 1차 수사 결과에 대책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님.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는 서술이 있어야 차후 판단이 어려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총학생회: 다양한 사례를 참조해보았을 때, 여러 이유로 판단이 어려운 사건이 많음. 처리기구 각각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기호를 판단의 근

거로 삼기는 어려움. 관련 기관의 수사 결과 등을 참고할 수 있다는 서술이 필요해보임.)

6. 지금 있는 학생회칙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그러나 지금의 반폭회칙은 대책위에 따라 그 결과나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 해설을 달아서 진행해야 할 것.

7. 9조 3항 2번 인권침해 관련 해설이 없어 해석 어려울 수 있음. 관련 내용에 있어서 참조가 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과 같이 피해당사자, 가해당사자 등 인권 침해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해야 할 것. 더불어 피해 당사자와 가해 당사자 관련 내용을 모두 기술하면서도 ‘가해 당사자의 악용’경계하는 부분을 꼭 삽입해야 할 것.

-간호대학

1. 용어 자체가 가해 당사자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7조 2항에서 말하듯 ‘추정’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확한 피의자로 판명되기 전까지 ‘모욕적인 대우 받지 않을 권리’, ‘신뢰인 동반, 고통을 줄일 권리’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 피해 당사자의 권리와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나 그 간극은 줄여야 함.

2. 사적 폭력의 사전적 뜻 = ‘사법체계’를 거치지 않은 폭력. 뜻에 대해 해설을 써놓거나, 피해 관련자가 행하는 복수, 사건 처리 기구가 집행한 제재 등의 내용으로 풀어쓰는 것이 이해를 도울 것.

4. 보편적 권리 내의 모든 부분을 모두 풀어 서술할 필요 없이 두 권리 이외 한쪽에만 국한된 내용을 찾아 하위항목으로 삽입하는 방법도 검토 필요.

5. 현 해설의 원 취지가 회칙의 왜곡 또는 오독을 최대한 줄이려 하는 것. 무리하여 쉬운 단어로 현 회칙 내용을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회칙에 적합한 단어를 사용하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을 다는 것이 바람직함.

6. 현 해설의 상당부분이 이미 상세하게 기술된 만큼 해설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쓸 필요 없음.

8. 10조 3항 2 가해자에 대한 서술 중 ‘공동체의 신뢰를 배반한’ 표현이 없더라도 이해 가능하므로 삭제되어도 좋을 것.

9. 11조 2항 등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유의 표현이 다수. 회칙에 걸맞도록 조금 더 분명한 느낌으로 문장이 종결되기를 바람.

-동아리연합회

1. 1조 ‘성적 자율권을 확보한다.’라는 서술, 개인의 주체성이 부족해보임. 회칙이 확보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확보하는 것이므로, 회칙은 개인이 성적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의 서술이 이루어져야 함.

2. 2조 회원의 성원 등 회칙 내 유사 의미 단어에 대한 통일 필요.

3. 5조 2항 성평등위원회 질의서 관련 내용,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견 있었음. 출마 소견서, 공약, 청문회 등에서 관련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외부에서 만들어진 질문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제약에 거부감. 왜 성평등과 관련한 부분에서만 의무적으로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지, 성평등에 답변한다면 사회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의무가 되어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의견일치X)

4. 6조 1항, ‘2차 피해’가 아닌 ‘2차 가해’로 표기된 이유는 무엇인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로 내용을 한정하는 이유?(소극적이고 간접적인 피해는 다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피해의 경중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5. ‘2차 가해’ 해설 2번,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의심되는~’ 부분. 사건 평가에 있어서 사건 자체에 대한 상호 진술이 엇갈리고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서 집행기구가 판단할 수 없을 때. 사후 정황을 참고할 수밖에 없음. 사후 정황을 참고한 판단 자체를 2차 가해로 볼 것인지, 해당 사후 판단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 사후 정황을 참고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 긍정적일 것.

6. 8조 2항 피해당사자의 권리와 가해당사자의 권리 나뉘어 있으나, 가해당사자의 권리를 포괄적 권리로 올리고 피해당사자의 권리는 회복에 대한 부분을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사건 해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 역시 있어야 함)
7. 회칙의 명명은 '성평등 문화 확산' 회칙이나 내용의 상당부분이 가해자 처벌로 내용이 쏠려있음. 피해자를 보호하고 권리는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해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피해당사자를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음. 두 대상 간 권리 간극을 좁히되 피해자에게 사건 이후 다시 공동체 내로 돌아왔을 때 원활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 (심리상담 지원 등에 대한 의견 나온 바 있음.)
8. '권리'의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 사건 해결에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음. 구체화 필요.
9. 1차 사건에 대한 내용도 다를 것인지? 1차 수사기관에서 무죄판결을 내렸을 때 이 회칙에 의해 어떤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10. 10조 2항 1, 11조 2항 1,2의 투명성과 개방성. 공론화가 되었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음. 평가 과정에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위험요소가 있음. '접수된 사건에 대해 활발히 토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토론의 장이 아니라 한 개인의 중요한 일을 가십화 시킬 위험성이 있음.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토론은 부적합하다고 생각. 처리 완료 이후 결과에 대해 사건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회칙 내 공개 범위에 따라 작성된 결과 보고서 식의 공고를 내는 것이 더욱 긍정적일 것.
11. 8조 4항. 신고인이 익명으로 할 권리가 있지만 피해자 본인이 익명으로 접수를 할 수 있는지?(총/사과대: 접수까지 익명으로 처리 가능) 접수에 있어서의 익명 보장 권리로 수정할 필요. 익명 유지의 권리와 실제 사건 처리에 필요한 과정이 서로 상충.

-경영경제대학

1. 용어 의미가 모호하여 해설 없이 해석이 어려운 경우는 없어야 한다. 조항 용어가 지나치게 어려운 경우는 수정이 필요하다.
2. 회칙의 본문에만 법률용어 등을 사용하며 해설에는 되도록 쉬운 용어를 써야 한다. 해설이 없는 조항에도 용어 등에 대한 약간의 해설이 필요하다.
3. 가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회칙의 의의와는 별개로, 가해 당사자 역시 개인이자 확정 피의자가 아닌 상태이므로 피해 당사자의 권리와 동등한 수준으로 그를 보호해야 한다.
4. 세칙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총학생회칙에 두 회칙의 상충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보고 총학생회칙 안에 전부 삽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
5. 회칙에 해설이 필요한 것에는 동감하나 법률용어의 풀이 수준에서 작성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 특정 상황을 지나치게 가정하여 차후 사건을 다루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독이 생기지 않는 한하여 해설을 최소화하며 현 수준 이상의 '회칙의 적용과 상황에 대한 해설'은 지양되어야 함.

-사범대학

1. 7조 1항, '피해호소인'과 '피해당사자' 단어가 다른 이유? 단어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사회과학대학: 신고인이 피해당사자가 아닐 수 있음.

-간호대학: 피해를 직접적으로 호소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지?

-총학생회: 단어 통일에 대해 논의할 것.

*논의점

1.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피해당사자 지원의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 공동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회칙의 취지.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은 이미 학내 인권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 학생회비 등의 공금 사용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의 방식, 사용 자체에 대한 합의가 진행된 부분 없으므로 선불리 논의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당사자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회칙이 해석되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것.

2. 선거 관련 성평등위원회 질의서

2.1. 내용의 범위에 대해 알기 어려움.

: 중앙선관위가 후보자에 발송된 질문지를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범위가 지나치게 크거나 질문 의의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2.2 질의서 의무화에 대한 동의

-사회과학대학: 해당 질의서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됨. 지속적으로 해당 질의서를 보낼 것이라 생각.(총학생회: 현 회칙 등 어디에도 관련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하고 그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없음. 학우들의 관심도와 후보 평가 등 선거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바, 앞으로의 중앙대학교 선거에 질문지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해당 내용을 회칙 개정 수정 제안안에 삽입하게 된 것임.) 선거 준비 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측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 선거시행세칙의 수정과 함께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

-간호대학: 전반적인 인권 감수성이 올라갈수록 질문지에 응답하지 않는 자체가 후보자에게 불이익이 될 것. 더불어 선거 주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가 중심이 되어 진행 되는 것이 긍정적일 것.

□ 기타 안건

1. 회칙/세칙 개정 관련

: 25일 수요일까지 학과별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등 취합하여 송부 요망.